

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(제7차)

1. 일 시	2015년 10월 15일(목) 14:30 ~ 15:00	2. 장 소	8동 3층 HI Lab
3. 참석자	김용걸, 나윤섭, 박의수, 양재득, 이동수, 양용원, 유영태, 신희망		
4. 불참자	신희진	5. 불참사유	휴학
6. 안 건	2015년도 사학연금(퇴직수당)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심의		

7. 회의 내용

위원장 :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가 성원되었음을 알리고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상정한 예산담당관인 김익진 재무팀장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함.

주무관 : 금일 회의안건은 2015년도 사학연금(퇴직수당) 법인부담금 학교부담에 관한 심의로 사립학교법교직원연금법 제47조(법인부담금) 1항~3항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9조 3의 1항에 의거하여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밝히다.

주무관 :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게 되어있으며 학교의 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음. 사학연금 학교부담은 매년 연단위로 기간 및 금액을 정하여 신청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2015년 사학연금(재해보상) 및 퇴직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법인 부담액을 계상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등록금심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하려고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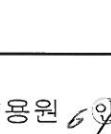
주무관 : 사학연금(재해보상) 법인부담금은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, 퇴직수당 40%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음. 우리대학은 2012년부터 학교의 수익사업 확장으로 매년 법인부담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학교부담 승인액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을 설명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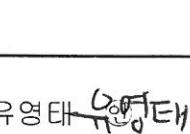
2015년 법정부담금은 약 700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부담금은 450백만원 그리고 학교부담금은 250백만원으로 산정하여 교육부의 승인신청을 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다.

나윤섭 위원 : 승인을 받지 않거나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제재조치를 질의하다.

주무관 : 학교부담 위반 금에 대한 보전조치(6개월 이내) 및 관련 임원 및 직원을 징계함은 물론 조치 요구사항을 미 이행 하였을 시에는 행정제재(정원관리 등)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하다.

부위원장 : 나윤섭 

위 원: 양용원 

위 원 : 유영태 

이동수 위원 : 승인신청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다.

주무관 : 관련 부담금에 대한 학교법인의 승인신청은 15년 11월로 예정되고 있으며 재정상태 평가 및 재정여건 개선계획 검토 및 교육부 승인 결과 통보는 16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설명함.

유영태 위원 : 2011년부터 법인부담금이 두 배 이상 올랐는데 타 대학의 사례는 어떤지 질의하다.

주무관 : 타 대학의 사례를 보면 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법인부담금이 전무한 대학도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대학은 부동산 임대 및 도, 소매업의 수익사업을 통해 법인부담금을 매년 확충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설명하다.

위원장 :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하며 회의록에 나윤섭 부위원장, 양용원 위원, 유영태 위원 3인을 산서명자로 할 것을 제안하다.

위원들 : 모두 이의 없이 동의하다.

위원장 : 금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심의한 것처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계획에 맞추어 승인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,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

위 심의사항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서명 · 날인함

2015년 10월 15일

위원장 : 김용걸 

부위원장: 나윤섭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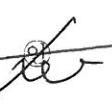
위 원 : 박의수 

위 원 : 신희진 

위 원: 유영태 

위 원 : 신희만 

위 원 : 양용원 

위 원: 양재득 

위 원 : 이동수 